

2023년도 국가공무원 교정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실기시험(체력검사)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교정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실기시험(체력검사)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응시 일정 : 2023. 11. 10.(금)**

응시번호	인원	응시 시간 (시간엄수)	비고
붙임2 참고	53명	오전 10:00	

※ 응시자는 [붙임2]의 개인별 응시일정에 명시된 시간까지 체력검사장에 입실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그 시간 외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2. 시험장소

- 서울동부구치소 체육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 찾아오시는 방법은 【붙임 4】 체력검사장 약도 참조

3. 응시대상

- 2023년도 교정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 개인별 응시일정 및 조편성은 【붙임 2】 참조

4.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 【붙임 3】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표 참조

5.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운동복, 운동화, 생수, 마스크 등

- **장갑이나 스파이크 또는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현장에서 합격여부 고지

- 체력검사 직후 현장에서 개인별로 합격여부를 고지하고, 별도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7. 응시자 준수사항

- 응시자는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여야 하며,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과 편성된 조에 따라 해당일 **10:0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09:40부터 등록 시작) 미등록자는 응시포기자로 간주되어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중 택일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교통편·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우천 시에도 체력검사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첨 : 「교정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별첨 1】**
- 체력검사 이전 또는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 체력검사는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장갑이나 스파이크 또는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장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이하 “시험관리관 등”이라 칭함)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 등의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생 본인에게 있으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개인별 응시일정에 따라 정해진 시간까지 체력검사장에 입실하여야 하고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체력검사장 입실이 불가능하며, 응시자 이외에는 체력검사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사진기,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사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및 측정방법은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56호) 및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제122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무부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소관법령 참조**

○ 긴장된 상태에서 체력검사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검사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며,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법무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코로나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로 자가격리 기간에 해당되는 응시생은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미착용시 응시 불가)**
 - ※ 확진자의 경우, 사전에 체력검사일 기준 자가격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시고, 교정본부 교정기획과(☎02-2110-34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및 행동수칙**에 따라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손 소독, 발열검사 등 체력검사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발열검사 등 시험 전 과정 방역 관련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 그 밖에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감독관이 판단한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10-3435, 3618)

[붙임 1]

부정행위 등 금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4호에 의거 금지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체력검사 판정표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체력검사 판정표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체력검사 판정표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 등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개인별 응시일정 및 조편성

□ 일시 : 2023. 11. 10.(금) 10:00 (09:40부터 등록시작)

1조(19명)	2조(19명)	3조(女15명)
45000047	45039133	45000014
45000053	45048001	45000129
45000132	45051011	45000287
45000159	45059013	45034002
45000180	45067901	45035012
45000195	45068005	45039011
45000230	45070007	45039039
45000240	45070023	45039067
45000253	45074052	45059018
45000257	45074105	45084040
45000326	45081901	45084054
45000344	45082030	45084083
45034003	45084014	45084118
45034004	45084074	45094043
45035020	45084077	45098002
45035044	45084098	
45039005	45092002	
45039018	45094029	
45039090	45094039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체력검사의 종목	성별	합격기준	실격기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남자	48회 이상	41회 이하
	여자	24회 이상	19회 이하
악력(握力)	남자	47.0kg 이상	41.9kg 이하
	여자	27.0kg 이상	21.9kg 이하
윗몸일으키기(60초)	남자	38회 이상	32회 이하
	여자	26회 이상	21회 이하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남자	12.29초 이내	13.61초 이후
	여자	14.60초 이내	15.61초 이후

※ 비고

1. 체력검사의 종목 중 1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해당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종목 중 2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3. 악력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한다.
4. 체력검사 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체력검사장 약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실내체육관(2층)
- 전화 : 02)402-9131



교통편


승용차 이용 안내

잠실 방향

잠실역 → 송파대로 → 건영아파트앞사거리 → 서울동부구치소(서울동부지방법원방향)

상남 방향

북정역 → 송파대로 → 건영아파트앞사거리 → 서울동부구치소(서울동부지방법원방향)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대로 → 건영아파트앞사거리 → 서울동부구치소(서울동부지방법원방향)

※ 네비게이션 이용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검색후 방문

※ 민원민 주차장 무료이용 가능함(단, 요일제 준수사항만 가능)


지하철 이용 안내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방향(도보 15분)

8호선 장지역

4번 출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방향(도보 15분)

3호선 수서역

6번 출구 - 402번 → 가든파이브공구상가 정류장 하차(20분 소요)

2호선 잠실역

(롯데월드 정문 옆)에서 362번 → 건영아파트 정류장 하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방향(도보 35분 소요)